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. 1. 19 선고 2022가단10180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, 임상순

피고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철

변론 종결2022. 12. 8.

판결 선고2023. 1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. 10. 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C에게 2020. 10. 16.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296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

- 1) 원고는 D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기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, 주식회사 F와 체결한 컴퓨터 임대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 보증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보증보험계약'이라 한다).
- 2)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E 주식회사,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- 3)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, 주식회사 F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였다.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가 각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.

1	이행(지급)	D 주식회사	E 주식회사	143,000,000	2019.3.25.-2021.3.24.	103,469,196	2020.5.18.
2	"	"	143,000,000	"	103,469,196	"	
3	"	"	143,000,000	"	103,469,196	"	
4	"	"	121,000,000	"	87,562,415	"	
5	"	"	143,000,000	"	25,535,476	2021.1.15.	
6	"	"	주식회사 F	5,400,000	2017.8.28.-2020.8.27.	5,400,000	2020.5.27.
합계	428,905,479						

나. C은 논산시 G 잡종지 1,15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소외 H주식회사(이하 'H'라 한다)로부터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. 3. 12. 접수 제75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(등기원인 2020. 3. 10. 매매, 거래가액 49,000,0000원)를 마쳤다. 그 후 C은

2020. 10. 5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9,000,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피고에게 같은 법원 2020. 10. 16. 접수 제296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(등기원인 2020. 10. 5. 매매, 거래가액 49,000,000원)를 마쳐주었다.

다.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므로(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7다54420 판결),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

1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

2)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,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

봄이 타당하다.

① 소외 J주식회사(이하 'J'이라고만 한다)은 2017. 12. 1.경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한 논산시 K 잡종지 10,783㎡를 H로부터 매수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, 위 J의 대표자는 L으로 피고의 동서이다.

②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2,539㎡으로 H의 소유였는데, 2020. 3. 3. 논산시 M 잡종지 1,115㎡와 N 잡종지 271㎡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,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위 M 및 N는 각 2020. 4. 14.자 매매를 원인으로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③ 피고는 J를 운영하는 동서 L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함께 하자고 추천받아서 자신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자 하였는데, J에 발전소용지를 매도한 H와 그 관계자인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, J 인근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.

④ 피고는 태양광발전소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인 2020. 9. 11. C에게 매매대금 49,000,000원을 모두 송금하였다.

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, 그 당시 C의 대리인이었던 I는 피고에게 자신이 'H'의 직원이라고 말하였다. 한편 위 소외 회사와 H의 대표자는 O로 동일하다.

⑥ 이 사건 토지는 J가 매수한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바로 인접하여 있고, 이 사건 토지의 C 이전의 소유자가 H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'H'의 직원인 I가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던 바,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명의만 C일 뿐 실질적으로는 H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

⑦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49,000,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크게 다르지 않고,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다른 채무나 재산관계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.

3)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, 결국 원고의 손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이숙미

별지